

Ⅲ. 예산총칙



제1조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예산 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회 계 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계	8,645,620,000	259,368,600
일 반 회 계	7,579,600,000	227,388,000
특 별 회 계	1,066,020,000	31,980,600
기 타 특 별 회 계	1,066,020,000	31,980,600
의 료 급 여 기 금 운 영	567,880,000	17,036,400
치 수 사 업	5,580,000	167,400
광 역 교 통 시 설	7,020,000	210,600
발전소지역자원시설세	96,222,000	2,886,660
학 교 용 지 부 담 금	32,936,000	988,080
낙 후 지 역 발 전	8,500,000	255,000
소 방 안 전	347,882,000	10,436,460

제2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·세출예산”과 같다.

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5,779,000천원으로 한다.

제4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10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5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IV. 예산규모



(단위:천원)

회 계 별	예 산 액	기정예산액	증(△)감	증 감 비 율
계	8,645,620,000	7,803,593,000	842,027,000	10.79%
일 반 회 계	7,579,600,000	7,072,400,000	507,200,000	7.17%
특 별 회 계	1,066,020,000	731,193,000	334,827,000	45.79%
기 타 특 별 회 계	1,066,020,000	731,193,000	334,827,000	45.79%
의료급여기금운영	567,880,000	480,298,000	87,582,000	18.23%
치 수 사 업	5,580,000	6,300,000	△720,000	△11.43%
광 역 교 통 시 설	7,020,000	2,563,000	4,457,000	173.90%
발전소지역자원시설세	96,222,000	104,800,000	△8,578,000	△8.19%
학 교 용 지 부 담 금	32,936,000	33,032,000	△96,000	△0.29%
낙 후 지 역 발 전	8,500,000	9,000,000	△500,000	△5.56%
소 방 안 전	347,882,000	95,200,000	252,682,000	265.42%